

자유전공학과운영규정

5-1-71

규정번호	5-1-71
제정일자	2024.7.24
최근개정	2026.2.6
개정차수	1차
관리부서	융합교육지원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2조의3에 따라 자유전공학과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자유전공학부 및 자유전공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자유전공학과에는 지도교수(J.A.)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6.02.06.)

1. 학생의 진로상담, 학사관리 및 학과배정 후 사후관리(신설 2026.02.06.)
2.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신설 2026.02.06.)
3. 학생설계전공 학생상담, 지도 및 관리(신설 2026.02.06.)

제4조(학과배정) 학과(전공) 배정이란 자유전공학과에서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학과(전공)을 선택하면 이에 따라 모집단위 기준으로 학과에 소속시킴을 의미한다.

제5조(교육과정) 자유전공학과의 교육과정은 진로 및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교과목 및 교양 교과목으로 편성하며, 타 학과에 개설된 전공기초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1. 교양 교과목 : 일반 교양 교과목
2. 진로/전공탐색 교과목 : 진로 및 전공 선택을 위한 탐색 교과목
3. 전공기초 교과목 : 우리대학 각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 이수를 위한 기초 교과목

제6조(학과배정 시기) 자유전공학과 입학생의 학과 배정은 1학년 1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학과배정 절차) ① 자유전공학과에서는 자유전공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별표1]의 학과(전공) 배정 의향서를 제출받아 진로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② 자유전공학과 1학년 1학기 재학생은 [별표2]의 학과(전공)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자유전공학과 학과장 확인 후 자유전공학과에 제출한다.(개정 2026.02.06.)

③ 자유전공학과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학생이 배정을 신청한 학과 학과장 확인 후 1학년 1학기 기말시험 후 1주일 이내에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한다.

④ 1학년 1학기 재학 중인 학생이 학과 배정 전 휴학 할 경우, 휴학 전에 학과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학과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정 의향서에 기준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학과배정 기준) ① 학과 배정은 학생이 배정을 원하는 학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 배정 신청은 한 차례에 한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신청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71 자유전공학과운영규정

할 수 있다.

③ 학생이 배정 신청한 학과가 입학 시 면접 또는 실기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유사한 면접 또는 실기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학과 배정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 면접 또는 실기 평가를 실시한 학과는 [별표3]의 평가표를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학과배정시 이수학점의 인정)(조명변경 2026.02.06.) ① 기 취득 학점 중 교양 과목은 전부 인정한다.

② 전공과목은 전공선택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지 않은 교과목은 일반 선택으로 인정한다.

제10조(학생설계전공의 정의) 학생설계전공이란 학생이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과(전공)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스스로 구성하고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02.06.]

제11조(신청 및 승인) 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설계전공 신청 기간에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지침에서 정하는 소정의 서식을 구비하여 자유전공학과 학과장의 확인 후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설계전공의 승인은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본조신설 2026.02.06.]

제12조(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① 학생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은 학생 본인의 설계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수의 학과(전공) 교과목을 조합하여 편성한다.

②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는 학사내규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2.06.]

제13조(운영지침) 학생설계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02.06.]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호·제2호·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